

[] 치과기공소 [] 폐업 또는 []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
[] 안경업소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• 폐업,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: 즉시 • 개설 장소 변경: 2일
개설자	성명	생년월일
치과기공소 • 안경업소	명칭	개설등록번호
	소재지	
신고사항	[] 폐업 [] 개설 장소 변경 []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	
폐업일	년 월 일	
개설 장소	변경 전	
	변경 후	
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	변경 전	
	변경 후	
	변경사유	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

→

접수

→

서류 검토

→

변경사항 기재

→

확인·날인

→

개설등록증
발급

신고인

처리기관
(특별자치시·
특별자치도·
시·군·구)

처리기관
(특별자치시·
특별자치도·
시·군·구)

처리기관
(특별자치시·
특별자치도·
시·군·구)

처리기관
(특별자치시·
특별자치도·
시·군·구)

처리기관
(특별자치시·
특별자치도·
시·군·구)

처리기관
(특별자치시·
특별자치도·
시·군·구)